

롯데카드 신용카드 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이하 “고객”)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한 중요 서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아래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신용카드는 신용을 담보로 이를 소지한 회원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현금의 즉시 지불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반드시 회원이 발급을 신청하여야 신용카드가 발행됩니다.

※ 신용카드는 본인의 신용한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매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와는 사용 가능가맹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 가능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직불카드 가맹점
발급기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	은행
이용한도	신용한도 이내	예금잔액 이내	예금잔액 이내
결제	선구매 후결제	구매 즉시	구매 즉시
할부결제 이용	가능	불가능	불가능

민원·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Q1. 카드 뒷면에 서명을 꼭 해야 하나요?

→ 회원은 발급된 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분실하는 경우,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2. 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는 어떻게 반환받나요?

→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연회비 부과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카드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계산하여 **10영업일**(불가피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카드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Q3.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 금소법 상 필수 포함사항)

→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월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시) 지난 달 이월금액 50만원, 이번 달 30만원(일시불) 이용시 약정결제비율(50%), **수수료율(연 17%)**로 가정했을 때 청구되는 금액은 총 406,989원(①+②)이며, 다음 달로 이월되는 잔액은 40만원(③)입니다.

① 리볼빙 수수료 : 6,986원(전월 잔액(50만원)×수수료율(17%)×30일/365일)

② 청구되는 원금 : 40만원([50만원(이월금액)+30만원(당월 이용액)]×50%)

③ 이월잔액 : 40만원(80만원(이월금액+당월 이용액)-40만원(청구원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 발생하는 불이익

Q.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에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금융거래가 제약**되고 **신용점수 등이 하락**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Q.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민원사항이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롯데카드 고객센터(1588-8100)**를 통해 금융상품에 관한 문의가 가능하며, 분쟁 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성

- 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을 담보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현금의 즉시 지불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증표입니다. 반드시 회원이 발급을 신청해야 신용카드가 발행됩니다.
-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카드 표면에 표시됩니다. 유효기간이 도래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신용카드를 갱신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갱신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이용대금 상환방법, 금리(수수료) 및 변동 여부

-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 (즉시결제, 가상계좌(대금결제를 위해 카드사가 회원별로 부여한 입금전용 계좌)입금 등)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금리(수수료율)
일시불결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방식	-
할부결제	할부기간에 걸쳐 동일 금액을 분할하여 결제하는 방식	7.1% ~ 19.9%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카드사가 미리 부여한 한도(신용카드 이용한도의 최대40%)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 금융서비스 ※ 이용일자 기준 다다음 결제일에 청구	4.9% ~ 19.9%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일정금액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대금에 대한 상환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는 신용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	5.89% ~ 19.99%

금리의 변동여부

- 회원이 할부결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시 이용개월,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는 변동 가능합니다.

3. 수수료율

- 해외서비스 수수료 : 신용카드 해외 이용 시(해외 사이트 거래 포함) 부과하는 수수료
→ 수수료율 : (0.2) %
(거래금액 ×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율
- 국제브랜드 수수료 :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수수료
→ 수수료율 : (0.8~1.4) %
(거래금액 × 국제브랜드사 이용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율
-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기 이용수수료
→ 이용수수료 : (700)원 ~ (1,300)원
* 해외ATM은행 정책에 따라 기기 이용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연회비 및 연회비 반환

- 연회비 : 연회비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구분	청구단위	연회비
기본연회비	카드별/회원별	신용카드 상품별로 다름
제휴연회비	카드별/회원별	

- 연회비 청구 :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신용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연회비 반환 :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루 단위로 계산하며 회원이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의 발행·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 발급에 한정)에 소요된 비용

→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예시) 연회비 2만원, 반환금액 산정 제외비용 1만원, 연회비 부과대상일수 365일, 잔여일수 100일인 경우 반환되는 연회비는 2,740원
(2만원-1만원)X100일/365일)

- 연회비 반환기한 :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5. 계약 해지 시 불이익

-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그 금액을 차감하여 반환하며, 카드사는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이용의 제한

- 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이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제한 가맹점: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장, 복권방, 해외가상화폐거래소 등

7.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는 대출, 신용카드, 시설대여(리스), 할부금융 등입니다.
- 필요 이상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개인신용평점이나 이용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한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 연계·제휴서비스(부가서비스)

- 해당 신용카드 상품의 연계·제휴서비스(부가서비스) 상세내용 및 제공 조건은 '상품안내장'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 연체이자율 및 연체에 따른 불이익

- 연체이자율은 [회원별·이용상품별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로 최고 연 20%로 합니다.

- 다만,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하는 경우 : 거래 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하는 경우 : 거래 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법정이율)과 상호금융가계자금대출 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연체에 따른 불이익

→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신용도 하락,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 발생, 카드이용 정지, 카드이용 한도감액, 카드이용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이용대금 결제일 전 이용대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채무자인 회원은 당초 지정한 이용대금 결제일까지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인 회원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이용대금을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등

-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등(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9조 등에서 정한 사유)

→ 카드사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참고) 주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 신용카드 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연체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등

11.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위험성 및 예시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여 이월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등 계산 사례

(예시)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잔액 : 50만원, 당월 신규이용금액 : 일시불 30만원,
 약정결제비율 : 50%, 최소결제비율 : 10%,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 17%,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경과일수 : 30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 10만원

구분	계산방법	금액
최소결제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8만원 + 6,986원 + 10만원 = 186,986원
약정결제금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 + 일부결제금액이월 약정(리볼빙) 수수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40만원 + 6,986원 + 10만원 = 506,986원
리볼빙 최소청구원금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최소결제비율	(50만원 + 30만원) × 10% = 8만원
리볼빙 수수료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 수수료율 × 이용경과일수/365(윤년은 366)	50만원 × 17% × 30일/365 = 6,986원
리볼빙 약정청구원금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약정결제비율	(50만원 + 30만원) × 50% = 40만원

※ 당월에 결제해야 할 금액은 약정결제금액(506,986원)이나, 최소결제금액(186,986원)만 결제하면 연체로 처리되지 않고,
 잔여결제금액(32만원)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체결 시 제공하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위법계약해지권

- 카드사가 아래와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날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서면, 우편,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식(계약해지 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카드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거절 시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13. 민원 및 분쟁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와 관련한 의문사항 또는 불편한 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롯데카드 인터넷 홈페이지 (www.lottecard.co.kr)** 또는 **고객센터(1588-81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4. 자료열람요구권

-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카드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구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고객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카드사는 고객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고객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카드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5. 신용카드 해지 신청 안내

- **해지 신청** : 회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카드사 앱, 콜센터를 통해 신용카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 [카드홈]마이(MY) > 카드 정보 관리 > 카드 해지 신청 > 본인인증 > 해지할 카드 선택 > 해지 신청 내용 확인 및 잔여포인트 확인 > 해지 사유 선택 > 해지버튼 클릭 > 처리 결과 안내(카드 해지 완료)
-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카드 해지 신청은 시간 제한 없이 가능
- [앱] 롯데카드(디지로카) 어플리케이션 > 메뉴 > 카드정보관리 > 카드 해지 신청 > 해지 전 확인사항 안내 > 본인인증 > 해지할 카드 선택 > 해지 신청 내용 확인 및 잔여포인트 확인 > 해지 사유 선택 > 해지 버튼 클릭 > 처리 결과 안내(카드 해지 완료)
- [콜센터] 1588-8100번 전화 > 누르는 ARS > 본인확인(본인맞으면 1번 및 비밀번호 4자리 입력) > ARS 3번(카드발급, 해지, 휴면카드 재이용) > ARS 3번(신용카드 해지) > ARS 1번(일부카드해지), 2번(보유카드 전부 해지) > 상담원 연결 > 카드 해지 완료
- ☞ 콜센터를 통한 신용카드 해지 신청은 9시~18시까지 가능
- **해지 처리** : 신용카드 해지로 인해 탈퇴가 되는 경우에는 **결제대금 납부, 포인트 소멸 안내** 등을 위해 **상담 직원과 통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6. 개인신용평가대응권

-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자동화평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삭제·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말합니다.
 - * 카드사 임직원이 평가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
 -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카드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롯데카드 홈페이지(www.lottecard.co.kr)를 통해 설명요청서 제출
 - 카드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월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자동화평가 주기 : 월1회)

해당 여부	<p>본인은 롯데카드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카드사 직원과 상담하여 본 설명서를 교부 받았으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p> <p><input type="checkbox"/> 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시 금리인하 요구권의 대상임을 확인하셨습니다? ■ 대상 □ 비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인 고객은 여전법 제50조의 13(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소득증가, 개인신용평점상승) 여전사에 금리인하를 요구 가능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대상에서 제외) - 금리인하요구권은 PC홈페이지, 모바일앱, 롯데카드 고객센터(1588-8100)를 통해 신청 - 미납 또는 거래정지 상태일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시 인하가 어려움 - 신청 후 10일(평일 기준) 이내에 전화 또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결과를 안내 <p>② 이용대금 연체 시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p> <p>③ 연회비 부과기간 만료 전 해지 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일괄하여 반환받고, 카드 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반환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사실,</p> <p>④ 카드 이용한도는 신청금액과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해지며, 카드사가 정기적으로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p> <p>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p> <p>⑥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연계제휴서비스의 내용 및 위법계약 해지권 등 고객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	---

고객 확인 : 20 . . .

(서명 / 인)